

연금시장리뷰 37호

주요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와 퇴직 연금의 역할

- 본 자료는 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위해 작성한 현대증권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발행하는 보고서로 퇴직연금 관련 이슈 및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 노총 중앙연구원·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 : 어기구 연구위원(02-6277-0175, kiyku@hanmail.net)

□ 주요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와 퇴직 연금의 역할

OECD 는 인구고령화는 장기적인 연금재정 위기(financial crisis)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연금급여의 위축 및 노인인구의 증가 등으로 노인빈곤위기(poverty crisis)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이러한 노후보장의 위기를 한편에서는 부과식 공적연금의 축소, 적립식 사적연금의 강화 그리고 표적화(targeted)된 기초보장의 강화 등을 통한 노후보장체계의 다층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인구고령화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98 년과 '07 년 두 번의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을 70%에서 40%로 크게 축소하는 한편, '05.12 월에는 법정퇴직금을 기존의 퇴직금제와 퇴직연금제의 선택제로 확대.개편하고, 07 년에는 기초노령연금의 도입 등을 통한 기초보장을 강화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연금의 경우 큰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퇴직연금의 경우는 연금전환율이 낮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1~2 층제도의 보편성과 적절성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해 인구고령화기의 노인빈곤위기에 대응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어진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민연금(08 년 노령연금부분 지출 4.8 조원)과 기초노령연금 부분(09 년 예산 3.7 조원)에만 연간 8.5 조원을 지출하고, 비용측면에서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해 적지 않는 노후보장부담(8.3+9%=17.3%)을 함에도 불구하고 두 제도의 노후보장기능은 향후에도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따라서 급속히 다가오는 인구고령화와 그에 따른 재정위기와 빈곤위기에 보다 효율적인 대응할 수 있는 노후보장체계는 1) 노인빈곤문제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야 하며, 2) 1~2 층의 핵심적인 노후보장제도인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보편성과 적절성이 베이부세대가 은퇴기에 완전히 접어들기 전에 확보되어야 하며, 3) 공적연금은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과 함께 퇴직 전 소득의 60~70%는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검토해본 해외 선진 6 개국은 각기 다른 노후보장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공통적인 점은 모두 공적연금의 내실화가 확실히 이루어져 있고, 기업연금 등도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영국, 호주, 스위스는 즉 기초연금을 운영하는 국가의 경우 기업연금이 취업근로자의 90% 이상을 포괄할 만큼 매우 보편적이다. 이들 국가들은 기업연금을 강제화하고 사실상 2 층의 공적비례연금을 부분 혹은 완전히 대체하는 제도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미국, 독일, 일본의 경우는 퇴직연금 보급률이 50% 전후로 우리보다는 훨씬 발달되어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퇴직연금이 잘 발달되어 있어 국민노후보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

이들 선진국가의 경우 오늘날과 같이 퇴직연금의 역할이 정립된 것은 상당한 개선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1970 년대부터 ERISA 법의 제정 등을 통해 퇴직연금을 크게 강화하여 왔으며, 일본과 독일 등도 2000 년대에 접어들면서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을 낮추면서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을 크게 강화하였고, 영국은 1960 년대부터 contract out 제도(준강제화)를 통해, 스위스와 호주는 각각 1985 년, 1992 년에 퇴직연금을 법정 강제화하면서 퇴직연금의 역할을 크게 강화하였다.

이러한 선진국가의 노후보장체계와 우리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겠다. 첫째,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을 크게 낮추는 상황에서 퇴직연금의 내실화 및 역할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공적연금과 적정하고 균형적인 역할분담구조 하에서 있을 때 잘 발달할 수 있다. 셋째, 퇴직연금이 90% 이상의 취업근로자를 포괄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의 강제화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넷째, 호주.스위스.영국처럼 퇴직연금을 강제화하려면 공적연금의 역할은 가능한 한 기초적 보장에 국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당장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등의 수준으로 더욱 하향 조정하고 퇴직연금을 강제화하는 등의 급진적인 개혁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장기적인 비전하에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I. 서론

- 우리나라는 외형적으로나마 3 층 보장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도 공사연금 각 제도의 역할이 미흡한 실정임. 특히 퇴직연금의 역할은 2050 년을 넘어선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크게 미흡함

- 따라서 해외의 다층보장체계, 그 속에서의 퇴직연금의 역할변화 및 우리나라의 공·사연금 발전 전망 등을 토대로 우리 퇴직연금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장·단기 발전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글에서는 크게 다음 세 가지 목적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함

- 첫째, 퇴직연금 역할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 및 노후보장의 국제적 동향 파악
- 둘째, 특히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호주, 스위스 등 선진 6 개국을 대상으로 노후보장체계와 그 속에서 퇴직연금의 역할 및 최근의 변화 동향을 구체적으로 파악
- 셋째, 국가별 사례연구 및 우리나라 다층보장체계 구축방향 및 방안에 대한 국제기구의 권고, 국내 연구자들의 분석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노후보장체계 및 그 속에서의 퇴직연금 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함

II. 퇴직연금 역할강화의 필요성과 노후보장의 국제적 동향

○ 공적연금의 개혁 추세

- 개혁배경

- 세계 2 차 대전 이후 고도성장과 함께 부과방식(pay-as-you-go)의 재정방식을 배경으로 공적연금은 급속한 팽창을 도모하여 옴
- 그러나 1970년대 1·2 차 오일쇼크, 그 후 지속되고 있는 저성장·고실업 시대, 저출산 및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 나아가 90년대 이후 진행된 개방화와 세계화 등은 부과방식 공적연금의 재정불안을 심화시키고 있음
- 1990년대까지는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은 기존 노후보장체계 내에서 개별제도의 변화를 추구하는 보수적 개혁에 안주함
- 그러다가 급기야는 2000년대 전후로 본격적으로 연금체계의 변화 즉, 다층체계로의 전환 및 공·사연금의 역할분담구조의 조정을 목표로 하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개혁(structural or fundamental reform)에 돌입하기 시작함

- 개혁추세 : 이러한 구조적 개혁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먼저 노후보장에서 과중한 비중을 차지하는 기존 부과방식 공적연금을 줄이고 그 대신 적립식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대한 점임
 - 또한 인구고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DB 형 공적연금 자체를 재정적으로 보다 신축적인 DC(또는 準 DC)로 전환하는가 하며, 사적연금에서도 DB 형에서 재정적 신축성이 높은 DC 형 또는 개인연금으로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는 점임
 - 이러한 구조적 개혁은 사실 주로 공적연금이 노후보장에 있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 즉 공적연금의 비중이 높지 않는 국가들에서는 퇴직연금부분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데 초점을 둔 사례도 많이 있음
 - 예를 들어, 종전에 부과방식의 기초연금만 운영하던 국가에서는 이를 보완하는 동시에 적립방식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연금의 가입을 강제화 내지 준 강제화하였는데, 대표적인 국가로 스위스, 덴마크, 네덜란드, 호주 등이 있음

○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강화 필요성

- 재정적 유연성 제고와 위험의 분산 : 세계은행, ILO 등 국제기구들은 연금제도가 직면하는 위험으로 크게 인구학적 위험(longevity risk), 정치적 위험(political risk), 경제적 위험(economic risk)으로 구분하고 있음
 - DB 형 부과방식 공적연금은 인구학적 위험과 정치적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반면, DC 형의 적립식 연금은 경제적 위험에 자유롭지 못하는 등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음
 - 특히 부과방식의 DB 형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노후보장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것은 위험분산 및 재정적 유연성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므로 공·사연금의 적정 혼합 및 다층화하여 노후소득의 다변화 필요
 - 다시 말해,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사연금의 역할분담을 재구축하여야 한다는 것임
- 경제성장의 촉진 및 노령부양부담의 축소 : 부과방식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적립식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하면 국민저축이 증가하고 노동공급을 촉진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이론적 주장 대두
 - 또한 (공·사연금 관계없이) 적립방식의 강화는 장기자본의 공급원이 되므로 자본시장의 발달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생산요소의 생산성을 제고함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도 강조되고 있음
 - 강화된 사적연금은 개인에게 투자선택권을 주기 때문에 노후보장에 대한 개인책임의식을 강화하게 되고 공적연금의 비용을 줄이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함
 - 특히 적립방식 사적연금의 강화가 국민저축과 근로의욕을 증대시키고 경제성장을 촉진하여 전체 파이를 증가시킨다면 현역세대의 노인부양비 부담을 완화시킬 가능성은 있다고 함

- 적정 보장수준의 유지

- 저성장,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한 연금재정의 악화는 이제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적연금 부분의 축소를 통해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공적부분의 연금축소는 총 급여수준의 균형을 깨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대부분의 국가는 공적연금 개혁과 함께 사적연금 부분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함께 추진
- 물론 공·사연금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적절한 것인가 그리고 각 제도가 분담해야 할 적정 보장수준은 얼마인가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나 이론은 없음
- 최근의 개혁국가들의 경우를 보면, 대개 국가마다 이제까지 정책적으로 유지해온 공적연금의 보장수준이 감축되는 만큼 기업연금 등 사적연금 부분을 통해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나아가 공적연금의 축소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사실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에서 소외될 가능성도 높은 집단은 저소득계층이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기초적 보장 및 빈곤예방에 초점을 둔 보완적 급여프로그램(소위 0 층의 기초보장제도)의 확충 내지 도입도 적정노후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영국의 pension credit, 캐나다의 최저소득보장제도, 독일의 노인기초보장제도, 스웨덴의 최저연금보증제도 등 저소득층에 표적화(targeting)된 기초보장제도가 사적연금의 강화 및 다층화의 바람을 타고 많은 국가에서 확충 또는 정비되고 있음

-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강화 전략

- 많은 국가는 앞에서 언급한 다층화의 필요성에 의거하여 사적연금을 강화하게 되었는데,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각 국가들이 처한 배경과 상황에 따라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그러한 사적연금의 강제화 여부 및 공적연금의 대체·보완여부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으로 그 전략을 구분해 볼 수 있음

< 표 1. 사적연금의 역할강화 유형 >

구분		사적연금	
		강제	임의
공적연금	대체	칠레, 스웨덴 등 공적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제가입 개인연금으로 대체 (민영화)	영국, 일본 등 임의 사적연금을 통한 공적연금의 대체 (적용 제외형;contract out)
	보완	스위스 등 사적연금 강제화를 통한 공적연금 보완 (사적연금의 강제화)	미국, 독일 등 세제확대 등을 통한 임의가입 사적연금 확대로 보완 (임의 사적연금 강화)

Ⅲ. 일본의 노후보장체계와 퇴직연금의 역할

○ 개관

- 일본은 공적연금(기초+비례 이원체계), 임의가입의 퇴직연금, 개인연금 및 저축 등 전형적인 3층 노후보장체계를 갖추고 있음

< 그림 1. 일본의 노후보장체계(2000년 초 기업연금 개편 전) >

3층	개인연금 및 재형저축			
2층	국민연금기금	후생연금기금	적격퇴직연금	자사연금, 퇴직금 등
1층	부가연금	후생연금		공제연금
	국민연금(기초연금)			
	자영자 등	피용자의 피부양배우자	민간피용자	공무원 등

* 부가연금은 (구)국민연금법에 의한 임의가입 연금(정액 추가보험료를 납부하고 그에 상응하여 정액급여 수급)으로 제 1호가입자가 적용대상인 급여임.

* 굵은 선 안의 제도는 강제제도이며, 기타 점선 안 등 제도는 임의제도를 의미함.

○ 공적연금제도

- 발전과정

- 일본은 이미 최초의 공적연금인 노동자연금보험이 도입되기 훨씬 이전(1941년)에 이미 퇴직일시금을 위주로 하는 임의 퇴직금제도가 발달
- 이는 1950~1960년대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높은 임금상승에 따른 퇴직금채무의 급증을 우려하여 연금화되기 시작함
- 초기에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부담의 분산차원에서 자사연금이, 1959년에 중소기업퇴직금공제(중퇴금)제도, 특정단체퇴직금공제제도 등이 도입됨
- 1962년에 비로소 DB형, 사외적립과 세제혜택, 연금지급, 종업원 기여분담 등을 특징을 하는 '세제적격퇴직연금'을 도입
- 1965년에는 기업연금과 후생연금간의 중복 조정을 위해, 후생연금의 적용제외제도인 '후생연금기금'제도가 도입되었음
- 2000년대 전까지 일본의 퇴직급여는 후생연금기금, 적격퇴직연금, 자사연금 등 비적격퇴직연금 그리고 중소기업퇴직공제 등을 포함한 퇴직일시금제도로 구분되었음
- 기타 자영자 등을 위해 국민연금에 부가되는 임의가입의 퇴직연금이 1989년에 시행

- 2000년대 기업연금 개혁 내용

- 1990년대 버블경제의 붕괴과정을 거치면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연금의 재정기반을 강화하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부가적 노후보장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음
- 이에 2001~2002년에 걸쳐 확정기여형기업연금법(2001.10)과 확정급여형기업연금법(2002.4)의 제정 시행(기존 퇴직일시금제도의 기업연금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퇴직금충당금에 대한 기업손비인정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도 있었음) 그리고 2004년 동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음
- 그런데 동 법률들은 이제까지 핵심적인 기업연금제도인 적격퇴직연금과 후생연금기금을 대체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향후 일본 퇴직급여체계의 큰 개편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제도전환추세: 2000년대의 제도개편으로 의도된 대로 후생연금기금과 적격퇴직연금이 두드러지게 감소하고 특히 DC와 중소기업퇴직공제제도로의 전환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표 3. 제도개편 이후 주요 기업연금의 가입건수 증감추이 >

(단위: 건)

연도	2001(A)	2002	2003	2004	2005	2006(B)	B-A
후생기금	1,737	1,656	1,357	838	687	663	△1,074
확정급부	0	15	312	987	1,432	1,866	1,866
적격퇴직	73,582	66,752	59,162	52,761	45,090	0	△28,492
확정기여	0	0	2,379	4,350	6,664	8,046	8,046
중소퇴직	0	1,215	3,413	5,015	9,001	11,153	11,153

* 확정급부와 확정기여형연금은 제도시행 사업체수를 나타내며, 중소퇴직(중소기업퇴직공제)은

적격퇴직연금에서 전환해 온 사업체수만을 나타내고 있음. 자료: 연금과 경제, 2007.4 월호

○ 노후보장에 있어 퇴직연금의 역할

- 2000 년 초 기업연금의 대대적인 개편과 공적연금의 개혁으로 일본의 기업연금은 종전의 적격연금과 후생연금 중심에서 신제도(DB 와 DC)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될 전망

< 표 4. 일본 퇴직연금의 현황 (2004.3) >

구분	적격퇴직연금	후생연금기금	신 DB	신 DC	계
단체 수(개)	58,704	1,350	307	2,591	62,600
가입자수 (천명)	7,779 (41.9)	8,498 (45.8)	1,358 (7.3)	918 (5.0)	18,553 (100)
수탁고 (억엔)	207,186 (26.8)	481,486 (62.4)	77,865 (10.1)	5,476 (0.7)	77,201 (100)

- 나아가 현재는 노후보장에 있어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노후생계수단은 공적연금(노인세대의 총소득의 약 70%를 점하고 있음)임

- 하지만 공적연금의 슬림화 및 퇴직연금의 강화 등으로 장기적으로 공적연금의 비중은 낮아지고 퇴직연금의 역할은 커질 것으로 전망됨

IV. 독일의 노후보장체계와 퇴직연금의 역할

○ 개관

- 독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저소득노인을 위한 기초보장제도(0 층), 공적연금(1 층), 퇴직연금(2 층), 개인연금(3 층)으로 구성되어 있음

< 그림 2. 독일의 노후보장체계 >

3층 부가연금	임의가입공적연금		개인연금		인증제 개인연금		
					광부연금	국가보조퇴직연금	공공부문퇴직연금
2층 보충연금						퇴직연금	
1층 기본연금	자영자 직능 연금	농민 연금	자유직업자특별 연금	생산직·사무직 근로자 연금			공적 연금
0층	기초보장제						
포괄 계층	자영업자	직능 단체 가입 자	농민	예술가등 일부 자영자	광부	생산직·사무직노동자	공무원
	자영업자				근로자		
	민간부문					공공부문	

자료: Schmaehl(2004: 156).

○ 공적연금제도

- 발전과정

- 1889년 처음으로 제도 도입 후 부과방식 완전비례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1957년에 대개혁으로 오늘날에 이름
- 그 이후에는 주로 가입대상 확대 등 제도내실화 추구
- 1992년에 재정안정화를 위한 개혁이 이루어졌으나 주로 국고부담 인상 등 수입측면의 개혁이 중심
-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구조적 개혁은 2000년에 접어들어 비로소 시작
- 2001/2004년 인증제 개인연금인 리스터(Reister) 개인연금의 도입과 새로운 노인기초보장제 실시(2001)
- 공적연금의 장기재정안정성 확보 위해 인구 및 경제변동에 연동하여 급여수준을 감축하는 '지속가능성계수' 도입(2004), 이를 통해 DB를 준DC로 전환
- 2007년: 공적연금 지급개시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상향조정

- 제도의 현황

- 16 세 이상 65 세 미만의 모든 피용자, 사회급여수급자, 일부자영업자 포괄. 경제활동인구 대비 약 80%가 공적연금의 가입자(보험료납부자)임
- 부과방식으로 '보험료'와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됨. 전체 수입에서 정부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 임
- 보험료율은 현재 19~20%를 유지하고 있으나 2004 년 개혁으로 2030 년까지 2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고정
- 5 년 이상 65 세 도달 시 연금이 지급되며, 표준급여수준(45 년 가입 평균소득자 기준)은 현재 48%수준(2020 년에 46%, 2030 년에 43%로 하향조정 중)

- 국가보조의 개인연금 : 리스터연금

- 2001 년 공적연금의 장기적인 축소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적제도로 국고보조와 강한 국가적 규제를 가진 개인연금(리스터 연금) 도입
- 동 제도는 공적연금 가입대상자 및 그 배우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며, 부담률은 공적연금 적용소득의 4%. 국가는 정액의 보조금을 지급. 장기적으로 공적연금 급여수준이 축소되는 만큼 보완하게 됨
- 현재 약 1,300 만명이 가입 중이며, 장기적으로 공적연금 가입자의 70%가 가입할 것으로 전망

○ 퇴직연금제도

- 발전과정

- 19 세기말 생산직 노동자 뿐 아니라 사무직 노동자들을 위한 퇴직연금이 확산됨
- 법적인 틀은 상당히 늦게 마련되어 1974 년에 와서야 퇴직연금개선을 위한 기업노령부양법(Gesetz zur betrieblichen Altersvorsorge)을 통해 갖추어 짐
- 1999 년 퇴직연금에서 확정기여방식에 대한 규정(2001 년 시행)이 도입되었음
- 2001 년의 연금개혁 시 국가가 퇴직연금에 대한 재정지원(아이헬연금)을 실시하고, 급여희생을 통한 퇴직연금에 대한 법권리가 도입됨. 이로써 퇴직연금은 새로운 발전을 맞게 됨

- 제도의 현황

- 2006 년에 독일 근로자의 64%가 퇴직연금에 가입
-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확정급여방식으로 운영되며, 급여수준은 주로 특정 수준으로 제한된 총괄급여액(타연금액과 합친 금액)에 의해 정해짐. 즉 전체 총괄급여가 일정수준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퇴직연금의 급여가 정해짐
- 2001 년 개혁으로 비로소 확정기여방식도 도입됨. 따라서 아직까지는 많이 확산된 방식은 아님

- 연금수급권 및 휴대성 보장

- 1974 년 퇴직연금촉진법에서 사용자의 지불능력 상실시 퇴직연금급여의 보장에 대한 규정(지급보증보험 형태)과 수급권의 휴대성 규정이 도입되었음(BetrAVG 1975)
- 퇴직연금은 직접보장, 지원금고, 직접보험, 연금금고, 연금기금(Pensionsfonds) 등의 형태로 조직 가능, 특히 연금기금은 2001 년이 새로이 도입된 방식으로 외부적립, DC 급여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음
- 5 가지 보장형태 중 직접보장이 전체 퇴직연금기금 중 5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연금금고와 직접보험이 차지

< 표 5. 독일의 퇴직연금의 종류와 운영규모(2006 년) >

(단위: 억 유로)

퇴직연금 종류	내부적 실행방법		외부적 실행방법		
	직접보장	지원금고	직접보험	연금금고	연금기금
운영규모	2330	375	458	916	22
	56%	9%	11%	23%	0.5%

- 2001 년 연금개혁에서 퇴직연금제도가 개선된 후 퇴직연금은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특히 2001 년 12 월에서 2006 년 12 월까지 가입자는 13% 증가

< 표 6. 퇴직연금 종류별 발전추이 >

(2001 년 12 월=100, 연금기금의 경우는 2002 년 12 월=100)

	연금금고	연금기금	직접보험	직접지원/지원금고
2001 년 12 월	100.0		100.0	100.0
2002 년 12 월	149.0	100.0	99.0	100.9
2003 년 12 월	233.0	154.4	98.8	104.8
2004 년 12 월	253.6	171.9	99.6	106.9
2005 년 12 월	293.7	214.0	98.5	122.2
2006 년 12 월	308.4	503.5	100.8	127.1

자료: TNS Infratest Sozialforschung

○ 노후보장에 있어 퇴직연금의 역할

- 종전에 제공된 높은 공적연금수준으로 인해 현재 65 세 이상 노인들의 노후보장에 있어 공적연금의 역할은 절대적인 수준임
 - 그로 인해 퇴직연금의 역할은 유럽 국가 내에서도 거의 하위수준임

< 표 7. 65 세 이상 노인의 소득구조(2003 년) >

(%)

소득원천	비중
공적연금	66
타 연금제도	21
근로활동	4
금융소득, 임대소득, 생명보험	7
주택수당, 사회부조, 노후기초보장	1
전체	100

자료: BMAS, Alterssicherung in Deutschland 2003

< 표 8 주요 유럽국가 노인들의 노후소득원의 구성 (단위 : %) >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스페인	이태리	프랑스	덴마크	그리스
1 층	88.1	76.6	58.3	94.9	90.9	75.4	72.6	90.9
2 층	4.3	15.1	29.4	9.9	0	19.8	17.4	0
3 층	5.3	5.9	0	0	6.9	3.5	7.8	5.7
근로	2.3	2.4	2.5	2.6	2.2	1.3	2.2	3.4

자료 : DIA(2006).

- 퇴직연금의 발전 전망

- 그러나 2000 년 이후 퇴직연금 지속적인 개선은 퇴직연금의 수급자와 급여액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따라서 향후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에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높아질 전망임

< 표 9. 사회보험 당연적용대상자 중 퇴직연금 수급요건 채운 근로자의 비중의 추이 >

(2001 년~2006 년)

	사회보험당연적용자수(천명)	퇴직연금 요건충족자수	퇴직연금 요건충족자 비중(%)	변화(2004=100)
2001 년 12 월	27,864	14,363	52	84.2
2002 년 12 월	27,360	15,139	55	89.0
2003 년 12 월	26,746	15,473	58	97.8
2004 년 6 월	26,524	15,717	59	100
2005 년 12 월	26,206	16,712	63.8	106.3
2006 년 12 월	26,647	17,296	64.9	110.0

자료 : TNS Infratest Sozialforschung.

V. 영국의 노후보장체계와 퇴직연금의 역할

○ 개관

- 영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

- 0 층제도로서 저소득노인을 위한 연금크레딧(보장크레딧과 저축크레딧), 1 층제도로 국민개보험의 기초연금(1 층), 2 층제도로 국가이층연금(state second pension : S2P)과 적용제외 사적연금, 3 층제도로서 자발적 개인연금인 AVCs 혹은 FSAVVs로 구성되어 있음

<표 10. 영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

삼층체계	부가적기여(AVCs 혹은 FSAVVs)		
이층체계	개인연금/ 스톡홀더연금	퇴직연금(확정급여(50%) ₁ , 확정기여)/ 스톡홀더 퇴직연금	국가이층연금 (18%) ₁
일층체계+ 영층체계	기초연금(17%) ₁ + 연금크레딧(보장크레딧 + 저축크레딧)		
	비경활인구	자영업자	근로자

1. 세후(net) 평균소득대체율을 의미하며, 40년 기여를 하고 65세에 퇴직한 경우를 가정으로 하고 있으며, 전체근로자의 3/4 정도가 국가 2층연금에서 퇴직연금 등을 통한 적용제외되고 있음.

자료 : European Union(2006).

○ 공적연금제도

- 발전과정

- 제 2 차대전 후 「비버리지 보고서」에 근거해 「1946년 국민보험법」이 제정되고 이것에 의해, 균일 기여·균일 급여의 원칙에 의한 사회보험제도 도입
- 1975년 소득비례연금(SERPS : State Earnings Related Pensions)과 확정급여 기업연금의 가입자에게는 소득비례연금의 가입이 면제하는 적용제외제도가 도입됨
- 1979년 수립된 대처정권과 이를 따른 메이저 정권은 공적연금의 슬림화를 목적으로 한 개혁을 실시함
- 「1986년 사회보장법」에서는 적용제외제도에 대해 「확정기여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개정됨
- 1997년에 집권한 블레어 노동당 정권은, 사적연금에 비중을 두는 방침을 계승하면서 사적연금의 정비·확충을 진행시킴과 동시에, 빈곤한 저소득 고령자의 구제에 주력함
- 2001년에 신형 사적연금 「스태이크홀더 연금」의 도입, 2002년에 저·중소득자층의 급여수준 향상에 초점을 둔 「국가 제 2 연금」의 창설, 2003년에 저소득 고령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세금을 재원으로 한 무기여 급여의 「연금 크레딧」의 도입 등
- 2007년 연금법 개정
- 기초연금 : 연금수급요건 크게 완화, 급여수준의 적정성 제고 조치 강구, 국가 이층 연금 : 장애기간 등에 대한 연금크레딧을 확대하고, 사적연금에 의한 적용제외제도 정비
- 공적연금 지급개시연령의 단계적 상향: 65세에서 68세로 2024년부터 2046년까지 상향조정

- 제도의 현황

- 국민보험은 남성 16 세 ~ 64 세(49 년), 여성 16 세 ~ 59 세(44 년)의 연령에 있고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와 자영자는 의무가입대상임. 2004 년 국민보험 가입대상 연령구간에 있는 인구의 78.6%가 국민보험 가입
- 기초연금과 부가연금 모두, 부과방식에 의해 운영. 적립금은 2 개월 급여 지급분만 보유함
- 국민보험료는 피고용자, 자영업자, 임의가입자, 적용제외 가입여부에 따라 기여방식과 수준이 다름
- 피고용자가 적용제외제도를 선택했을 경우, 부가연금에 드는 보험료 분만큼 보험료 부담이 감소함. 이 보험료는 환불(rebate)로 불림
- 확정 급여 기업연금에 의해 적용제외를 받았을 경우, 리베이트 분만큼 공제한 보험료를 지불하게 됨
- 개인연금으로 적용제외를 받았을 경우, 일단 국민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고, 이 후 리베이트 분이 개인계좌에 환불됨
- 확정기여 기업연금은 상기 2 개의 방식이 조합됨
- 정액의 기초연금은 평균소득의 약 15%에 상당하는 수준이며, 국가이층연금(State Second Pension; 이하 S2P) 은 저소득층에 유리한 급여구조

○ 퇴직연금제도

- 발전과정

- 영국의 퇴직연금은 공적연금이 도입되기 훨씬 이전인 1834 년 Superannuation Act 로 시작되었고 1950 년대에 본격적으로 보급됨
- 1975 년 부가연금제도 창설과 DB 형 기업연금에 대해 적용제외제도 도입(노동당)
- 1986 년 개정(보수당):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목표로 DC 형 퇴직연금 및 적격개인연금 가입 시에도 적용제외 허용
- 1995 년 연금법(보수당) : 연금기금의 자산운용 사고(맥스웰 사건), 남녀차별금지 등의 판결에 영향을 받아 수급권보호 강화를 통한 퇴직연금 신뢰도와 선호도 개선에 중점
- 1999 년 연금법 개정(노동당 정부) : 개인연금을 통하여 보다 안정된 소득보장을 할 수 있도록 2 층 공적연금을 대체할 수 있는 스테이크홀더 연금(stakeholder pension) 신설
- 2004 년 연금개혁(노동당 정부): 연금보호기금 및 재정지원제도, 수탁자의 의무 강화, 연금규제기관(the pension regulator) 설치
- 2008 년 개혁 : 새로운 개인계좌(individual account)의 도입 : 피용자는 소득의 4%를 기여, 사용자는 동일한 소득구간에 대하여 최소한 보험료 3% 납부(매년 1%씩 3 년을 거쳐 단계적 보험료를 상승 예정), 국가가 감세형태(tax credit)로 보험료 기여에 참가(소득의 1% 상당)
- 자동가입제(auto enrollment) 도입: 2012 년부터 퇴직연금에 아직 가입하지 않는 피용자는 명백히 가입거부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신규 개인계좌로 자동으로 가입됨(강제가입이 아님)

- 제도의 현황

- 2008 년 1 월 퇴직연금의 전체 가입자는 1,610 만명인데 그 중에서 180 만명이 확정급여형에, 1,430 만명(전체가입자의 88.8%)이 확정급여형이나 혼합형에 가입.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하지만 퇴직연금의 전체가입자는 1986 년 연금개혁으로 개인연금제도를 통한 적용제외가 인정됨으로써 줄어드는 추세임. 그 대신 1986 년 연금개혁에서 개인연금이 적용제외 대상으로 포괄됨에 따라 적용제외 개인연금의 가입이 증가하고 있음
- 영국의 퇴직연금은 DB 형 퇴직연금(salary-related scheme)이 전통적인 방식이며, DC 형 퇴직연금으로는 현금구매제도(money purchase scheme) 운영
- 이외에도 2001 년에 시행된 스택홀더 연금, 2007 년에 도입된 개인계좌연금 등의 퇴직연금을 통해 제 2 국가연금으로부터 적용제외 가능

< 표 11. 연금형태별 적용제외된 가입자의 추이(천명) >

	1988-1989	1999-2000	2003-2004
개인연금	3,219	5,714	4,693
Money purchase (DC 형 퇴직연금)	n/a	n/a	102
스택홀더	390	290	198
혼합형	190	424	340
확정급여형 퇴직연금(민간)	4,751	3,267	2,827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공공)	3,811	4,303	4,906
합계	12,361	13,998	13,065

자료 :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Second Tier Pension Provision, 2006.

○ 노후보장에 있어 퇴직연금의 역할

- 전통적으로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해온 영국의 노후소득보장에서 공적연금의 비중은 점차적으로 축소되고 사적연금 특히 퇴직연금의 역할이 강화되는 추세
- 공적연금의 지급율은 유지되고 있으나 연금수급자 소득에서의 비중은 61%에서 51%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퇴직연금의 지급율은 40%에서 60%로 확대되었고, 소득에서의 비중도 16%에서 26%로 높아졌음

< 표 12. 연금수급자의 소득원 >

	연금수급자 비율		연금수급자 소득에 비중	
	1979	2001	1979	2001
공적연금급여	97	98	61	51
퇴직연금	40	60	16	26
개인연금	n/a	8	-	3
투자	62	69	11	10
근로소득	n/a	8	16	9
장애급여	4	21		

자료 : Clasen(2008)

- 향후 영국은 노후소득보장에서 사적소득의 역할을 더욱더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공사연금의 비중을 2050 년경에는 4:6 까지 확대 추진 중임

< 표 13. 영국의 공사연금 비중 추이 >

	공적 소득	사적 소득
1996 년 7 월	57%	43%
2000 년 1 월	55%	45%
2004 년 5 월	56%	44%
2050 의 목표	40%	60%

주 : 공적소득은 공적연금 및 자산조사 급여 그리고 연금크레딧 급여 등이 포함되며, 사적소득은 사적연금 및 기타 개인의 저축이나 투자로 인한 소득을 일컫음.

자료 : Pension Policy Institute(2006) and DWP(2006)

VI. 미국의 노후보장체계와 퇴직연금의 역할

○ 개관

- 미국의 노후보장체계는 1 층 공적연금(OASDI), 2 층 기업연금 그리고 3 층은 개인연금의 3 층구조 형태를 취하고 있음

< 그림 3. 미국의 노후보장체계 >

○ 공적연금제도



- 발전과정

- 미국의 국민연금(OASDI)은 1929 년의 대공황을 계기로 1935 년에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이 제정되면서 도입되었음
- 그 후 국민연금은 1937 년 적립방식에서 완전부과방식으로서의 전환, 연이은 적용대상 확대 등으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음
- 1972 년 0 층의 기초보장제도인 보충적 소득보장제도(SSI: 연방공적부조제도)가 확립되어 오늘날의 공적 노후보장체계의 기초가 확립되었음
- 1980 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보장연금제도의 재정이 팽박하여 사회보장연금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1983 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다소 큰 재정안정화 개혁이 이루어졌음
- 동 개혁은 지급개시연령의 점진적 상향조정(65 세→67 세), 연방공무원의 국민연금에의 통합일원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음

- 제도 현황

- 미국 국내에 거주하는 일정 소득 이상의 모든 피용자 및 자영자에 대하여 사업장의 규모, 국적, 연령에 관계없이 적용
- 연방공무원의 경우 1984 년부터, 지방공무원의 경우(자체 제도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1991 년부터 OASDI 의 당연적용 대상임
- 1940 년 가입대상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58%에 불과하던 것이 1970 년 77%, 2003 년 88%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취업인구 대비 95%에 상당함

- OASDI 는 기본적으로 부과방식(다소의 적립신탁기금 보유)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도 지출은 당연도의 보험료수입, 연금에 대한 과세수입, 기금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
 - 초기 보험료율은 2%에서 출발했으며, 현재 12.4%를 적용하고 있음
- 노령연금은 최소가입기간 40 분기(1 년 최대 가입기간 4 분기) 또는 10 년 이상 가입한 자로 2007 년 현재 65 세 10 개월에 완전연금 수급 가능
 - 표준가입자의 급여수준(소득대체율)은 퇴직전 소득의 40% 정도이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소득재분배 기능 내포

○ 퇴직연금제도

- 발전 과정
 - 미국의 퇴직연금제도는 1800 년대 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사가 최초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이래 미국 노후보장제도의 중요한 역할을 하며 발전해 왔음
 - 현재 미국 근로자의 2 명중 1 명은 어떠한 형태든 기업연금의 적용을 받고 있어, 3 층제도 중 기업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1974 년 ERISA 법이 제정되면서 기업연금에 대한 일반법적 규정이 마련되었으며, 1978 년 내국세법 401(K) 조항에 의한 DC 형 연금이 도입되면서 급속히 확산되어 현재 기업연금의 주종을 이루고 있음
- 제도 현황
 - 확정급부형(DB 형)과 확정각출형(DC 형), 두 제도의 혼합형인 캐시발란스(CB 형:Cash Balance)제도가 있음. DC 형 기업연금에는 401(k) plan, 403(b) plan, 457 plan 등이 있음. 이중 DC 형의 대표적 연금은 401(k)이며 미국 직장인 절반이상이 401(k)로 노후대비 중임
 - 미국의 기업연금은 강력한 세제혜택 등으로 근로자의 50% 이상을 포괄하며, 미국 기업연금자산의 신탁기관별 분포는 신탁형이 70% 가까이 차지
 - 이외에도 이직 시 중간정산제도(IRA), 연금종료보험(지급보증)제도(PBGC) 등을 통해 수급권을 보장하고 있음

○ 노후보장에 있어 퇴직연금의 역할

- 미국의 퇴직연금은 가입을 강제하지 않으면서도 유럽에 비해 훨씬 성숙되고 발달한 퇴직연금 시장과 시스템을 갖고 있음
 - 미국 직장인들에게 퇴직연금은 매우 중요한 노후소득 보장장치이며 그래서 미국인의 기업연금 의존도는 절대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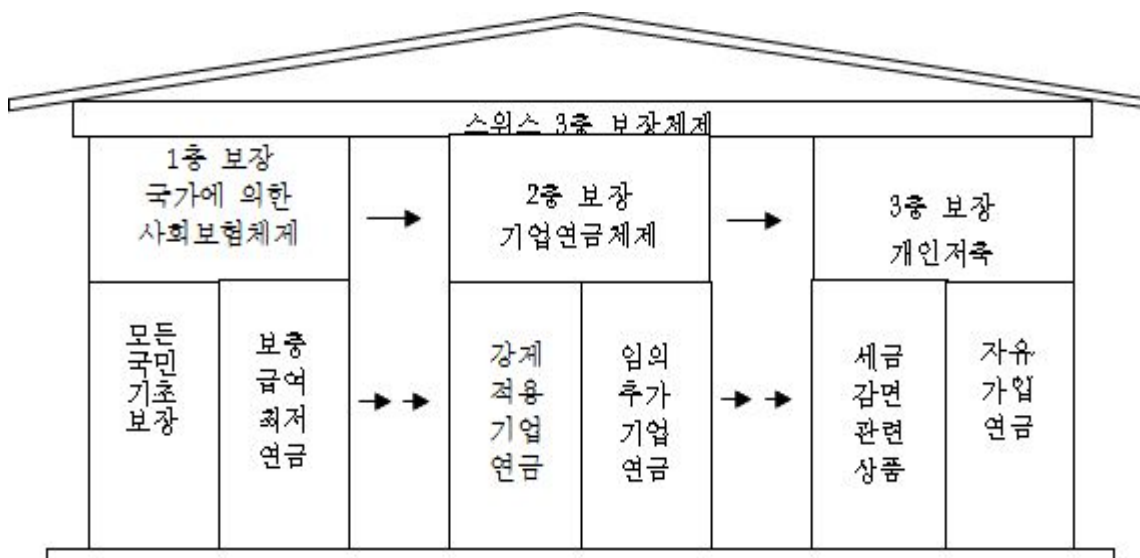
- 미국은 국가가 은퇴자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이른바 국가복지체계에 부담을 느끼면서 지난 '82년부터 DC 제도인 401(k)를 도입하여 제도도입 초기인 83년 가입규모는 약 900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말 현재 2조 달러로 21년 만에 20배 이상으로 급증했음
 - 미국 직장인의 64%는 401(k)를 주된 노후대비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 퇴직연금은 확정급여(DB)형은 지고 확정기여(DC)형이 대세임

VII. 스위스의 노후보장체계와 퇴직연금의 역할

○ 개관

- 스위스의 노후보장체계는 기초연금 상당의 1층제도(AHV/IV), 의무가입의 기업연금, 자발적 저축의 개인연금의 균형적인 3층보장체계 구축, 이외에도 0층의 노인 최저소득보장제도 운영

< 그림 4. 스위스의 3층 노후보장체계 >



자료: 스위스 연방사회보험청(BSV). <http://www.bsv.admin.ch/>

○ 공적연금제도

- 발전과정

- 1948 년 : 노령유족연금법(AHV) 시행
- 1960 년 : 장애보험 도입
- 1964년 : 기초연금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자산조사에 기초한 보충연금(0층의 최저소득보장) 지급
- 1972 년 :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에 3 층보장 원칙을 규정. 세계 최초로 공적보장(공적연금), 기업보장(기업연금), 자조노력(개인연금)에 의한 3 층 보장의 원리를 헌법에 규정
- 2007 년 : 연금연동방식의 유연화, 여성의 연금수급연령 상향 조정(남성과 일원화 조치 : 64 세 → 65 세)

- 제도 현황

- 소득활동여부와 국적 등과 관계없이 스위스 내 거주하는 21 세 ~65 세 미만의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가입
- 현재 기초연금의 가입규모는 약 400 만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96.6%에 상응하는 수준임
- 재원은 가입자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기금운용수익금, 연방 주정부의 국고보조금, 부가가치세 수입에서 전환되는 보조금 등으로 구성됨
- 재정운영방식으로 기초연금은 부과방식으로 국가가 운영하고 있으며 1 년치 연금지출액 상당의 유동성기금을 보유(liquidity fund)하고 있음
- 공적연금 급여의 최고수준이 평균 근로소득의 약 40%인 반면, 최저수준은 20% 정도임

○ 퇴직연금제도

- 발전 과정

- 스위스의 기업연금은 사실 사회보험에 의해 도입되기 훨씬 이전인 19세기부터 노사자율에 기초하여 도입
- 이러한 기업연금은 1960 년에 이르러서 이미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남성근로자의 2/3 그리고 여성근로자의 1/4)이 자율적 노사계약에 의하여 시행되었음
- 스위스 기업연금이 법제화(강제화)된 것은 1985 년임
- 1985 년 이전에는 스위스 노동력의 50% 정도만이 2 층 연금제도에 가입하였으나, 1985 년 가입강제화 이후 가입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함
- 1995 년에는 근로자의 직장 이동에 따른 기업연금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업연금 연계규정이 도입되었음
- 1995 년에 기업연금의 급여에 대한 지급보장에 관한 규정이 마련(기업연금보장기금(Sicherheitsfonds BVG)됨

- 제도 현황

- 스위스의 기업연금제도는 의무연금부분(BVG)와 임의가입의 보충연금부분(ZGB)로 구분됨
- 기업연금은 일반적으로 공적연금과 합쳐 퇴직 전 소득의 60~70%수준(40년 가입의 경우)의 소득대체율 달성을 목표로 함
- 2007년 현재 의무가입부분 기업연금제도에 약 3.2백만 근로자에게 가입하고 있으며, 근로가능인구의 76%(경제활동인구의 91%)가 가입
- 현행 규정에 의하면 기업연금의 부담률은 최소한 근로자 소득의 7%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최고 18%까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기업연금은 기본적으로 적립방식(Kapitaldeckungsverfahren)으로 운영되며, 각 개인은 각자의 연금계좌를 갖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됨
- 기업연금의 급여수급조건은 원칙적으로 1층 보장제도의 조건(1년 이상 가입, 65세 도달)과 매우 유사함
- 급여수준은 노령연금의 경우 개인계좌에 적립된 기금의 72%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물가에 연동하여 매년 지급하고 있는데(DB와 DC의 중간형태로 일률적임), 연금수준은 평균소득의 약 30%정도임
- 기업연금의 관리주체는 재단법인(Stiftung)이나 조합(Genossenschaft) 또는 공공기관(öffentlichrechtliche Einrichtung)이 될 수 있음

○ 노후보장에 있어 퇴직연금의 역할

- 스위스의 3층 보장체제는 공적 부분과 사적 부분의 조화와 균형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보장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음
- 특히 1985년 종전의 임의가입 기업연금을 의무가입제도로 전환함으로써 공적연금은 기초적 보장기능, 퇴직연금은 철저한 소득비례 중심의 노후보장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스위스 다층보장체계는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로부터 모범적인 다층보장체계로 소개되고 있음

Ⅷ. 호주의 노후보장체계와 퇴직연금의 역할

○ 개관

- 호주의 노후보장체계는 자산조사에 기초하는 기초연금제도('Age Pension' 등), 의무가입의 퇴직연금보증제도(Superannuation Guarantee), 그리고 개인저축 등이 골고루 발전되어 균형 있는 공사연금 역할분담을 하고 있음

< 표 14. 호주 노후보장체계의 구성 >

구분	1층	2층	3층
명칭	기초연금 (Age Pension 등)	퇴직연금보증 (Superannuation Guarantee)	개인연금 및 임의 퇴직연금
적용방식	자산조사/사회부조	강제가입 DC 형	임의가입
재원	연방정부 재정	기업납부금	개인납부금
대상집단	중·저소득 노인	근로자	가입자
형태	공적 연금	기업 연금	사적 연금

○ 공적연금제도

- 발전과정

- 1908 년에 노령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해 자산조사 및 국고재원에 기초하는 기초연금제도가 처음 실시
- 동 제도의 기본골격으로 현재까지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수급자 범위와 급여수준을 조정하는 등 미세조정에 그쳤음
- 1990 년대 들어서면서 인구고령화 문제를 크게 가시화되면서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확대하는 전략 추진
- 1992 년 강제가입 기업연금인 퇴직연금보증제도 도입
- 1997 년 고령자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기초연금의 수급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금수급을 연기 시(최고 5년, 70세까지)하고 보너스 지급 제도 도입

- 제도의 현황

- 언급한 바와 같이, 호주의 공적연금은 기초연금 단일체제로 구성되어 있음
- 동 제도의 대상은 호주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시민권자와 영주권자 포함)이며, 재원은 전액 조세로 조달. 공적연금(노령연금)지출이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0 년 2.9%, 1995 년 2.8%, 2003 년 3%로 거의 3%내외를 유지하고 있음
- 연금의 수급권은 연령과 거주요건에 의해 결정됨. 즉, 노령연금은 65 세(여자의 경우 1994 년부터 65 세로 상향조정 중이며, 2013 년 7 월부터 65 세가 적용)에 도달하여야 하며, 소득활동 및 퇴직여부와 관계없이 수급 가능
- 연령요건과 함께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노령연금의 청구가 가능한데, 연금청구 당시 호주에 거주 중이고 10 년 이상 연속 거주하여야 함
- 완전노령연금의 수준은 현역 남성근로자 평균임금의 25%수준
- 완전연금액은 소득과 자산조사에 의해 감액되거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나 전체 노인의 80%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

○ 퇴직연금보증제도

- 발전과정

- 1950 년부터 자발적 차원에서 기업연금 도입 시작, 1980 년대 전근로자(공무원 포함)의 35%가 적용
- 1985 년 생산성보상연금제의 도입으로 퇴직연금제가 전근로자로 확산
- 1992 년 퇴직연금보증제도의 도입 : 생산성보상연금제도의 취약성을 보완한 제도로 특히 가입의 강제화를 통해 보편화 도모

- 제도의 현황

- 퇴직연금보증제도는 기업에 따라 DB 와 DC 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전에 DB 를 유지해 오던 기업들도 DC 로 전환할 수 있음. 일부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거의 DC 방식을 채용
- 기업의 85%는 DC, 15%는 DB 방식 채택 중임
- 18 세부터 70 세까지 월 A\$ 450(2005 년~2009 년 7 월 1 AUD=1019.16 원, 약 45 만원)의 소득이 있는 모든 피용자는 당연적용 대상이 됨
- 2007 년 전제 근로자의 91%를 포괄하고 있으며, 정규직 근로자의 98%가 적용
- 퇴직연금의 의무기여율은 임금의 9%이며, 전액 사업주 부담
- 퇴직연금은 적립과 동시에 수급권이 발생하며 최소의무가입기간이 없이 55 세 이상이고 완전퇴직(장애 포함)하면 수급이 가능
- 퇴직연금기금은 기업/사용자기금, 산업퇴직기금, 공공부문기금, 소매펀드, 소규모 개인관리 펀드, 유자격이월펀드 또는 통산펀드 등의 기금형태로 설정
- 2008 년 현재 퇴직연금기금의 수는 총 40 만여 개에 이를 정도로 많지만, 대다수는 소규모 개인관리 펀드임

< 표 15. 호주의 사적연금기금 유형별 변동 추이 >

유형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Corporate	2,484	1,862	1,405	962	555	287	226
Industry	134	124	106	90	80	72	70
Public Sector	76	58	42	43	45	40	40
Retail	254	235	232	228	192	176	169
Small	235,626	262,175	287,564	304,379	323,200	363,112	393,611
Pooled Super-annuation trusts	179	160	143	130	123	101	90
Total	238,753	264,614	289,492	305,832	324,195	363,788	394,206

자료 : ARPA(2009) Annual Superannuation Bulletin.

- 2007 년 퇴직연금활성화 대책

- 연금형태로 수령 시 전액 비과세 혜택 부여, 최고 가입가능연령을 종전 70 세에서 75 세로 연장, 통산(Portability) 절차의 간소화, 퇴직연금급여에 대한 기초연금의 소득조사기준 완화 등의 조치를 취함

○ 노후보장에 있어 퇴직연금의 역할

- 영국과 유사하게 공적연금은 기초보장에 국한하고, 사적연금 중심의 노후보장체계 구축 발전 도모
 - 특히 1992 년 의무가입 퇴직연금 도입으로 다층체계 확대 개편
- 이로써 퇴직연금이 노후보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확대 전망
 - 1960 년의 경우 퇴직자 중 70%는 기초노령연금이 주소득원이었고 9%만이 퇴직연금이 주소득원이 이었지만, 향후에는 크게 공사연금의 관계가 오히려 역전될 것으로 전망됨

IX.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역할 재정립 방향

○ 현행 노후보장체계와 문제점

- 우리나라의 노후보장체계

< 그림 5. 우리나라의 노후보장체계도 >



- 3 층 보장체계의 외형을 갖추고 있으나 각 제도가 선진외국에 비해 내실이 없어 장단기 관점에서 노인빈곤위기 극복에 한계가 있을 전망
 - 특히 2050 년경 퇴직연금수급자는 60 세 이상 인구의 10% 내외(국민연금의 경우 50%) 내외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의 넓은 사각지대로 인해 실질적인 총급여수준(국민연금+퇴직연금)도 25% 내외수준에서 머물 전망

○ 국제기구 등의 개선안 분석

- 국제기구의 개선안
 - 세계은행(World bank)은 2000 년 당시 국민연금을 기초연금(30% 급여보장)으로 축소하고,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확대개편 주장
 - OECD(2001)는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을 조세조달의 기초연금(20% 보장)과 비례연금(20%)으로 이원화하고, 다층보장체계의 완성을 위해 퇴직금제도를 완전적립방식의 확정급여 또는 확정각출형의 기업연금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
- 국내연구의 개선안
 - 공사연금제도개선기획단 실무위원회(2000) : 현행유지안에서부터 다층체계로의 개편안 등 4 개안 제시
 - 방하남 외(2003, 2007), 김원식(2009) : 국민연금을 기초연금(조세+보험료)과 비례연금으로 분리하되, 비례연금의 퇴직연금과 연계조정(적용제외) 및 개인계정의 DC(또는 NDC) 및 완전적립방식으로 운영

○ 노후보장체계의 재구축과 퇴직연금 역할 재정립 방안

- 기본방향

- 현행의 노후보장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인구고령화는 연금재정 위기(financial crisis)뿐만 아니라 노인빈곤위기(poverty crisis)도 동시 야기 우려
- 따라서 급속히 다가오는 인구고령화와 그에 따른 재정위기와 빈곤위기에 보다 효율적인 대응할 수 있는 노후보장체계는 노인빈곤문제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야 함(그러기 위해서는 노인기초보장을 크게 강화하여야 함)
- 1~2 층의 핵심적인 노후보장제도인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보편성과 적절성이 베이비붐세대가 은퇴기에 완전히 접어들기 전에 확보되어야 하며(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내실화 및 급속한 발전과 정착이 이루어져야 함)
- 공적연금은 기본적 보장에 국한하되,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과 함께 퇴직전 소득의 60~70%는 보장할 수 있어야 함
- 모든 노인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재구축되어야 함(특히 특수직역연금의 평준화 개혁 즉, 국민연금과 일원화 개혁이 중요함)

- 추진방향

-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노후보장체계를 일거에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장단기 계획 하에 단계적으로 실현해 가는 것이 필요함
- 먼저, 단기적으로 현행제도를 유지하면서 각 제도부문별 내실화에 주력함
- 국민연금 : 사업장적용 확대, 크레딧제도 확대 등
- 퇴직연금 : 퇴직연금 전환율 등 적용범위 확대, 최소가입기간 단축(10년 → 5년) 및 수급연령 상향조정 등 연금수급 활성화 방안 등 마련
-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의 이원화 및 특수직역연금의 다층화를 통한 재정안정화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에의 통합정책 등의 추진 필요
- 기존체계 내에서 개선만으로는 베이비붐 세대 등의 노후보장 개선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기초연금 도입 등 기초보장 강화를 전제로 한 다층보장체계 확립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음

< 그림 6. 구조개편 후의 다층 노후보장체계 >

3 층	퇴직연금 (8.3%, 적립식)	퇴직금 (부과식)
2 층	비례연금(9%, 강화된 적립식)	
1 층	기초연금(조세, 부과식)	
	자영자	피용자

한국 노총 중앙연구원·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 어기구 연구위원(02-6277-0175, kiyku@hanmail.net)